

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 등 처분 통지 및 납부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구직자취업촉진법’)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 등 처분 통지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8. 25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



-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 등 처분 통지 및 납부 안내 공시송달
- 근 거: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7조 및 제28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 (생년월일)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 불능 사유
			처분 사유	처분의 내용	
김○아 (03.03.15.)	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(이하 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 등 처분 통지 및 납부 안내	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(‘26.4.5.~6.4.) 중 지인 통장으로 추가로 받은 소득(4회차 1,176,292원, 5회차 566,977원)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부정수급함	① 지급제한일(‘26.5.4.) 이후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 취소 ② 취업지원 종료 및 5년간 재참여 제한 ③ 구직촉진수당 1,200,000원 반환명령	폐문부재

4. 공고기간: 2026. 8. 25. ~ 2026. 9. 8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과 하윤이(Tel. 051-860-2136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